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4 선고 2018가단1112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 2018. 8. 21.

판결 선고 2018. 9. 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,915,463원 및 그중 81,466,235원에 대하여는 2017. 11. 29.부터,

13,842,071원에 대하여는 2017. 6. 14.부터, 22,358,639원에 대하여는 2017. 6. 29.부터,

나. 피고 주식회사 A, B, D는 연대하여 26,402,868원 및 그중 25,892,120원에 대하여 2017. 12.

26.부터

각 2018. 6. 12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2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1,3,4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민성

별지